

**평택 소사별 아너하임186**  
**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**

**1. 공급개요 및 규모**

- 공급위치 :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67번지 (소사별택지지구 S-1 블록)
- 공급규모 및 내역 : 총 186세대 [공동주택 지하 1층 / 지상 4층 및 부대복리시설]
-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대상 세대수 : 총 15세대

(단위 : 세대)

구분	84.9159	84.2551	계
	84A1	84A2	
평택시(30%)	3	2	5
경기도(20%)	1	1	2
기타지역(50%)	4	4	8
합계	8	7	15

※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※ 84A1 타입(주택형 84.9159)은 1~2층 복층 가든세대, 84A2 타입(주택형 84.2551)은 3~4층 복층 루프탑세대

**2. 특별공급 신청자격**

■ 신청자격

- 대상자 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장기복무군인, 중소기업근로자 등)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(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. 단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- 청약자격 요건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(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) 제외(철거주택 소유자, 국가유공자, 5·18민중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장애인 등)
  -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(단,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,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)
  -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㎡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
  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
※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3항 관련)

구분	평택시/특별시·광역시를 제외한 지역	서울특별시/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
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300만원	25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300만원	600만원	4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400만원	1,000만원	700만원
모든 면적	500만원	1,500만원	1,000만원

•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

- 주택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,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)
-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,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·비속

※ 「**무주택세대구성원**」이란 세대주,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.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4호)

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
### 3. 특별공급 일정 및 선정 방법

#### ■ 공급일정(예정)

모집공고일	신청일자	당첨자 선정	동·호수 발표	계약 체결	장소
2018.04.12.(목)	2018.04.18.(수) 10:00 ~ 14:00	2018.04.18.(수) 17:00	2018.04.26.(목)	2018.05.08.(화) ~ 2018.05.10.(목) [3일간, 10:00~16:00]	당사 견본주택

-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별공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.
-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은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야만 가능.
- 당첨 동·호수 확인 방법 : 아파트투유 홈페이지(www.ap2you.com)  
단,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.

#### 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(평택시)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%,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%,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50%를 공급함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.(미신청 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불가)
- 해당 주택형의 청약 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.
-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당첨자만 선정(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)하며, 동·호수 배정업무는 추첨기관(전산관리지정기관)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·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.

### 4. 특별공급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

#### ■ 유의사항

-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.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.
-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)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.(당첨자명단 관리, 계약체결불가)
-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,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-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,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관계 법령에 의거 공급됨.
-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
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.
-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.
-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,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.(신청자, 배우자,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
-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,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,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.
-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.
-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.

■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/ 무주택서약서	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용도: 주택공급 신청용 ※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	○	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청약통장 순위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발급 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 제외
	○		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	본인	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이 추천한 추천명단 또는 추천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(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)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	○	위임장	청약신청자	대리신청 시(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) - 위임장은 접수장소 비치
		○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(청약신청자)	청약신청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위임용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신청 불가)
		○	인장, 신분증(대리인)	대리인	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
※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표기 및 "주소변동이력"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5. 견본주택 위치 및 기타 문의 사항



홈페이지 : <http://honorheim186.co.kr>

견본주택 :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814번지

문의전화 : 031-656-0186

복층형 테라스 하우스 186세대 | 84/89/93m<sup>2</sup>

031) **656-0186**

